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75호로 2019년 2월 15일 김길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 [별표 2] ”로 함.(안 제3조제3항)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개정
(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
 - 현행 정액제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 나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함(안 별표 2)
 - 2019년 : 월2,762,570원
 - 2020년 ~ 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동결)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 ①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어 개정하지 아니하고,
 - ② 여비는 조례에 규정된 별표를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

- ③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의 50%인 1.3%를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반하지 않으나,
 - 의원의 직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要)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자주적으로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수를 전제로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 해야만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예비: 별표 5에 따른 예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